

## 사실과 의견 구분

# ‘사실’ 뒷받침 되지 않은 ‘과잉주장’... 언론 신뢰 해친다



김명서／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보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적발해 제재한 사례들을 통해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짚어보고 있다. 문제 사례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전국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신문에 실린 기사들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들도 소개한다. 일곱 번째 글은 ‘사실과 의견 구분’에 관한 이야기다.

## 기자 입맛대로 각색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 구분은 기본 중 기본이다. 언론의 생명인 진실 보도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다. 신문윤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보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이다. 그 여러 가지 항목들 가운데 제1항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이라는 점은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규정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규정은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이는 물론 뉴스를 육하원칙에 맞춰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해당 언론사나 기자, 외부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사설, 평론이나 칼럼 같은 ‘의견 기사’와는 상관없다. ‘의견 기사’ 역시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사실과 의견 구분’과는 궤를 달리한다.

물론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일도양단하듯 엄격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뉴스를 선택하고, 이를 기사화하고, 편집해 내보내는 과정에서 기자와 데스크의 의견이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의 실체에 대한 판단도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진짜 사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인지 불분명한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도 있다. 마감시간 등에 쫓겨 본의 아니게 일부 주장에 지나지 않는 ‘가짜 사실’과 ‘거짓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현장의 한계’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언론학자들은 물론 언론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해온 원초적 논란거리다. 더욱이 아직까지 명확한 답도 없다.

언론 환경의 변화도 사실과 의견의 엄격한 구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뉴스의 속보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의 몫이 돼버리고 말았다. 종이신문 등 기존 매체들은 뉴스 빠르기를 갖고는 경쟁을 펼치기 어려운 형편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속보성, 즉 사실 보도에서는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기획이나 심층취재, 해설 또는 분석 기사의 강화다. 오피니언 면을 늘려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보다는 의견 쪽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 자구책의 요체다. 기자 개인의 의견도 가미됐을 법한 스트레이트성 해설기사 또는 해설성 스트레이트 기사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된 것도 이러한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는 기사들은 대개가 이러한 구조적·환경적 요인들과는 상관이 없다.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과 생각을 앞세우다가 사실을과장하거나 왜곡한 기사들이 절대 다수다. 유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의도성, 경향성에 따른 과장과 왜곡이다. 기자 자신이나 소속 언론사의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성향 때문에 자기 입맛에만 맞추어 쓴 기사들이다. 작심하고 누군가를 치켜세우거나 비판하려다 보니 의도에 어긋나는 사실은 제쳐두고 반쪽 사실, 허위 사실을 사실의 전모인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형용사와 부사를 남발하는 것도 이러한 기사의 특징이다.

둘째는 취재 부실, 취재 소홀에 따른 추측성 보도 때문이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정과 추측, 선입견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다. 이러한 기사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따위의 전언형 서술어미를 많이 사용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취재원을 등장시켜 특정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카더라’식 보도다.

## 유형 1. 사실 확인 소홀한 고발 기사

의도성이 두드러지는 보도는 고발 기사에 많다. 문제점을 부각하려다 보니 객관적 사실 확인에 부실한 경우다. 민감한 기사일수록, 비판의 강도가 센 기사일수록 부실 정도는 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경기지역 D일보는 지난 5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호텔이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를 사회면 톱으로 내보냈다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허가된 주차 대수가 69대인데 9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 경사로에 까지 주차 구획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7년 8월 경남지역 K신문이 의령군 ‘갑질 횡포’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삽화.〈출처-필자 제공〉

“법을 무시한 일탈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비난의 화살 일부가 수원시를 향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그러나 기사에는 호텔 측의 주차장 법 위반을 누가 어떻게 비난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기사만 봐서는 ‘쇄도하는 비난’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호하다. 기자 개인의 편견을 일반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지역 K신문은 지난해 8월 ‘시장·군수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령군을 내세운 기사를 보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K신문은 의령군이 노인전문 병원 운영을 위탁한 모 의료재단과 피고, 원고로 맞선 운영비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갑질의 결과’로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의령군이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여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담당 기자는 행정소송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검찰과 의논해 처리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런데도 의령군이 밟은 일련의 절차를 ‘횡포’ 혹은 ‘갑질’로 단정해 보도했다. K신문은 의령군을 헐크처럼 묘사한 뒤 의료재단 쪽에 돈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담은 삽화도 게재했다. 의령군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소지가 컸지만, 이를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 유형 2. 구체적 근거 없이 ‘극우’, ‘극좌’로 매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해 ‘극우’ 또는 ‘극좌’라고 굴레를 씌우는 기사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K신문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전략공천하려는 데 대한 여론을 보도하면서 김 전 지사에게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의’ 조처를 받았다. 기사는 김 전 지사를



K신문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전략공천하려는 데 대한 여론을 보도하면서 김 전 지사에게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의’ 조처를 받았다. ©news1

‘극우 행보를 보여온’, ‘극우 색채가 짙다’, ‘극우 인사’ 등으로 묘사, 사실상 ‘극우’로 지목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은 “김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극우 색채가 짙다”뿐이었다. ‘극우’로 단정할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념적 갈등이나 진영 간 대결을 다룬 기사에서는 ‘좌파’, ‘우파’와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종종 ‘진보’, ‘보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된다. 그러나 ‘극우’, ‘극좌’라는 용어는 ‘좌파’, ‘우파’와는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폭력성과 반민주적 색채가 강한 부류를 일컫는 부정적인

“  
기자 자신이나 소속 언론사의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성향 때문에 기사를  
자기 입맛에 맞춰 쓴다. 작심하고 누군가를  
치켜세우거나 비판하려다 보니  
의도에 어긋나는 사실은 제쳐두고 반쪽 사실,  
허위 사실을 사실의 전모인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

용어다.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의 동의나 인정 따위가 없이 특정인을 지목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

## 유형 3. 특정인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의견 보도

선거기사에서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의심케 하는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사례가 잦은 편이다.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이미 객관화된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충청지역 C신문은 지난해 11월 6·13 세종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다자 대결 가면 최교진 교육감 확실히 유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가 제재를 받았다. 기사는 “전교조 출신으로 신도심 유권자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이다”, “다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 최 교육감의 승리는 유력한 상황” 등 시종일관 최 교육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신도심 유권자’들의 평가가 얼마나 높은지, 최 교육감이 유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기사에 없었다. 본문에 2014년 지방선거 때의 득표율 등이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현재의 지지율 판세를 ‘유력하다’, ‘확실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충청지역 C신문은 지난해 11월 6·13 세종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다자 대결 가면 최교진(사진 오른쪽) 교육감 확실히 유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가 제재를 받았다. ©news1

## [기획연재] 정은승-박경철 아내 이어온 재혼...누리꾼 비난 끝

관련이슈 :



KBS 정은승 아나운서가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의 재혼 소식이 누리꾼들을 들끓게 했다.

S포츠신문이 온라인판에 올린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과 정은승 KBS 아나운서의 재혼 기사. '누리꾼 비난 이어져'라는 사진 제목 및 설명과는 달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출처-필자 제공〉

것이 신문윤리위의 지적이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 일부를 전반적인 여론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사례는 온라인 매체에서 자주 등장한다.

S포츠신문의 지난해 6월 온라인판 '정은승-박경철 이혼 후 재혼... 비난 이어져' 제목의 기사도

이런 유형이다.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과 KBS 정은승 아나운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다. 그런데 리드에서부터 "재혼 소식이 누리꾼들을 들끓게 했다"고 표현하더니 "두 사람이 기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제목 표현처럼 '재혼에 비난 이어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체 댓글 중 어느 정도가 부정적인 견해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혼과 재혼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고, 일반화된 현상인데도 이를 비난의 대상으로 잡은 것부터가 기자의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주관적 술어 사용하지 말아야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신문윤리위가 개최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세미나에서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억제를 위해 '절차적 객관성'을 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어가 모호한 수동태 문장에서 주관적 술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관측된다', '전망이다' 등 추측성 술어, '지적받고 있다', '평가된다' 등 평가형 술어, '전해졌다', '알려졌다' 등 미확인 전언형 술어들이다. '의혹을 사고 있다' 등 의혹 제기형 술어, '빗발치고 있다', '쏟아지고 있다' 등 과장성 술어도 자체 대상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인용기사에는 주어를 써야 하고 그래야 술어도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사실보다 의견을 앞세우면 기사의 생명인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을 해친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부실 뉴스, 믿지 못할 뉴스가 되고 요즘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가 된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갖가지 정보가 차고 넘치면서 진짜뉴스, 믿을 만한 뉴스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가고 있다. 지금은 누구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중의 언론화 시대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 시대다. 기자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가르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설픈 이론과 주장은 역풍만 부를 수밖에 없다. 여론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언론의 위상 회복은 뉴스의 신뢰성 회복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사실에 충실히, 팩트로 무장한 뉴스가 정답이다. 당연히 사실과 의견 구분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사실과 의견 구분은 지금 우리 언론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사실을 찾아내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 기사 작성 시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주관적 표현의 술어들

추측성 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인다. 보이기도 했다.</li> <li>■ 관측되고 있다. 관측도 (나오고) 있다.</li> <li>■ 전망이다. 전망된다. 전망도 있다. 전망이 (까지) 나온다.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봤다. 내다봤다.</li> <li>■ 예고된다. 예상된다. 예정이다.</li> <li>■ 추산된다. 추정된다. 추정하고 있다.</li> <li>■ 우려(가)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려가 나온다. 우려된다. 우려가 크다. 우려를 낳게 한다. 우려되는 실정이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li> <li>■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듯하다.</li> <li>■ 시사했다. 시사하는 것이다.</li> <li>■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장이 나오고 있다.</li> </ul>
평가형 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을 받고 있다.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지적되고 있다. 지적이(도) 나오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 지적이 많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이다.</li> <li>■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판이 거세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li> <li>■ 평가를 받는다. 평가도 나온다. 평가된다. ~ 것이 일반적이다. 개연성이 높다. 짐작하게 한다.</li> <li>■ ~한 셈이다. ~한 셈이 됐다. ~해야 할 판이다. ~했을 법하다. ~를 느낄 수도 있다.</li> <li>■ 목소리가 높았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li> <li>■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낙점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게를 실었다. 핀잔을 들어야 했다. 불가피한 실정인 것이다. 일말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생색을 내고 있다. 힘을 얻고 있다. ~ 것도 문제다. 손을 들어주었다. 관측을 뒷받침했다. 고민하는 눈치다.</li> </ul>
미확인 전언형 술어	전해졌다. 알려졌다. 했다고 한다. 알려지고 있다. ~라고 전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쫓겨났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형 술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도 있다.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의문도 제기된다.
과장성 술어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폭풍 전야의 분위기였다. 투쟁 의지를 불태워왔다. 한결같은 지적이다. 쇄도하고 있다.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날을 세웠다. 급전직하의 낙락이다. 격찬이 쏟아졌다.

〈출처-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자료〉